

제28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2025.7.15.(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용 의원 대표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경위

- 발 의 자: 이선용 의원 외 4명  
※ (공동발의자) 김오현, 김재원, 이수현, 김태계 의원
- 발의일자: 2025. 7. 2.
- 심사일자: 2025. 7. 15.

## 2. 제안이유

-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하여 원활하고 탄력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도모하고, 의원의 다양한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서조항 삭제(안 제11조)
- 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강화(안 제12조)
- 다.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특례 신설(안 제17조)

##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 5. 검토의견

### ○ 개정 필요성 검토

-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의원 임기 시작 및 만료 시점과 연구활동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구활동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선거연도에 한해 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연구성과의 적시 보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 또한 연구활동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비 지원 규정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전환하여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은 타당함.

### ○ 조문 검토

- **안 제11조**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안 제17조**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한하여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적정하며, 특히, 지방선거로 인해 새로운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규정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선거연도에 한하여 연구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연속성과 적정한 결과보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에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해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한 것은 연구활동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의원 임기 변화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보완하고, 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의 적정성을 높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함.
- 다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예산 운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실무 매뉴얼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